

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

[시행 2021. 10. 14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82호, 2021. 10. 14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퇴직연금복지과), 044-202-7564

I.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(이하 "대지급금"이라 한다) 관련업무 지원금액

1. 업무별 지원금액

지 원 범 위	지 원 금 액
도산등사실인정	90만원
도산등사실불인정	45만원
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	6만원

* 그 밖의 경우 위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, 사업장당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
2.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,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